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직역연금 간 재직기간 합산 및 유족의 연령기준 상향 등〉
■ 윤종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61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직역연금 간 재직기간 합산 및 유족의 연령기준 상향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중군의원 등 15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2. 2.

다. 회부연월일 : 2025. 1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재직기간 합산 시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와 손자·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직역연금 간 형평성 측면에서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에도 타 직역 연금의 재직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아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상황이므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별정우체국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유족 중 자녀와 손자·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27조의4제1항제4호, 안 제33조의4 신설, 안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4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2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직역연금 간 재직기간 합산 및 유족의 연령기준 상향 등

가. 개정안 주요 내용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와 손자·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함.(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27조의4제1항제4호).
- 직원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직기간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타 직역연금의 관리기관은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퇴역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이체하도록 함(안 제33조의4 신설).
-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이 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생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② ----- ----- -----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9세 미만인 사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

③ (생략)

제27조의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①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 3.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5. (생략)

② (생략)

<신설>

-----.

-----.

1. 25세-----
2. 25세-----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의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25세가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4(연금액의 이체) 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퇴역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생략)

급자가 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4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그 퇴직한 사람 또는 그 유족(제24조의6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퇴역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24조의6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관리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퇴직한 직원이 다시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34조의2(재직기간의 합산 방법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 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연금관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직원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 연금인 급

② 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재직기간의 합산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7조제2항·제3항, 「공무원연금법」 제65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

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사항

□ 직역연금 간 재직기간의 합산 등

- 현행 별정우체국법은 퇴직급여 등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계산할 때 직원의 재직기간은 직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하고, 퇴직한 직원이 다시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는 종전의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함.¹⁾
- 현재 4대 직역연금²⁾ 근거법 중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3개 직역연금 간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나³⁾, 별정우체국연금은 직역연금 간 재직기간 합

1) 「별정우체국법」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계산할 때 직원의 재직기간은 직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에 따른다. 이 경우 월을 연으로 환산할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직원이 다시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2)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3)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②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군인연금법」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⑤ 퇴직한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①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교

산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별정우체국연금도 다른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직역연금 간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직역연금의 관리기관이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 이체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다른 직역연금과 별정우체국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다른 직역연금 근무이력이 있는 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여 퇴직 또는 사망 후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개정안은 다른 직역연금에서도 별정우체국연금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는 것을 전제할 때 형평성에 부합할 것이므로, 필수적으로 다른 직역연금법의 개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윤종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4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2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3호)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

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어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의 심사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직역연금 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다른 직역연금법에서 별정우체국연금의 재직기간 합산과 관련된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동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유족의 연령기준 사항

- 현행법은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를 유족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자녀와 손자·손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⁵⁾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않는 한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 19세라는 기준 연령은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기준과 같음.
- 그리고 현행법에서 유족에 포함되는 것은 이 법에 따른 유족급여⁶⁾의 수급권이 인정되는 의미가 있음.

4) 「별정우체국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족”이란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손자·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5) 시행령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로 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낮아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유족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25세로 상향하려는 취지임.
- 현재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⁷⁾ 등 일부 법률도 같은 취지로 개정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년층의 생활 보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만,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은 특정 직역연금이나 특정 사회보장제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공통된 조건이라

-
- 6)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3(유족급여) ①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직원이었던 사람이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 7) 「**군인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나.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 라.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 ② 제1항제4호나목의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와 「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장애(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25세 이상인 자녀로 한정한다.
- ③ 제1항제4호라목의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자녀로 한정한다. <개정 2022. 2. 3.>
1. 25세 미만인 손자녀
 2.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25세 이상인 손자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 2의2.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는 점을 감안하고, 위험 수준이 상당한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 산업재해 유족에 대한 보호 등 특정성이 상당한 경우인 점도 고려하여, 유족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연령 상향은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타 법령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별정우체국연금법이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은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연령 상향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개정안도 현재까지 발의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기준연령을 상향한 경우도 개별 법률에 따라 손자녀를 제외한 자녀의 기준 연령만 상향한다거나(국민연금법⁸⁾), 재해유족급여의 경우에만 기준연령을 상향하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⁹⁾)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므로 현행법에 가장 부합하는 개정 형태에 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 8)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자녀는 19세 미만인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 ③ 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19세 미만인 사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
- ④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재해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중 “19세”를 각각 “25세”로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나, 자녀 및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확대되면 후순위 수급권자인 직계존속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제한될 수 있는 점, 「공무원연금법」 등 여러 연금 관계 법률에서 19세 미만을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한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연금 간 운영의 형평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5